

규정개정20200225

2020년 2월 25일 고시된 [규정개정](#) 주요 내용

1.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
 1. 제3장 [수업연한](#) 및 [재학연한](#): 제5조(수업연한)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,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
 2. 의과대학 [의예과](#) 학년별 [수료 인정학점](#) 축소: [교육과정](#) 개편에 따른 [학년별 수료 인정학점](#) 축소
2. [직제](#) 규정 일부개정
 1. ERICA [교무처](#)에 [대학원진흥팀](#) 신설
 2. [창의융합교육원](#) [Writing Center](#) 신설
3.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: ERICA 교무처 [대학원진흥팀](#) 신설
4.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: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(징계)
5. 일반직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: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,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개정